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6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임오경·김재원·박 정

진선미 • 한민수 • 임미애

강유정 • 윤후덕 • 서영교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 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行爲에는"을 "행위 및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條(심신장애인) ①・② (생	第10條(심신장애인)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	③
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	행위 및 음주나 약물(「마약류
하지 아니한다.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
	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
	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
	<u>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u> -
	<u>.</u>